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의6서식] <개정 2020. 5. 27.>

서 약 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난()은 서약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일시			처리기간 즉시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
	주소		전화번호 (유선) (휴대전화)
			전자우편
서약 내용	일반공급 신청자 []		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(1983년 08월 29일부터 2004년 08월 28일 사이에 출생자)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소득 및 자산, 지역요건 없음 ⑤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포함) 소유·운행자
	특별공급 신청자	청년[]	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(1983년 08월 29일부터 2004년 08월 28일 사이에 출생자)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소득 기준(*전년도(2022년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) ※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포함)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일 것 ⑤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,683만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 ⑥ 본인 자산 가액 2억9,900만원 이하

본인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5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이 위 작성 내용과 동일함을 서약합니다. 향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서약자 (서명 또는 인)

[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태성 청년안심주택] 귀하

유의사항

1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9제4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합니다.
2. 본인 및 본인의 세대에 속한 자 전원에 대해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.
3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등에서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을 임차인의 요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